『2023년 ICT 벤처·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』모집공고

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역 ICT 산업육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, ICT벤처·중소기업의 R&D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『ICT 벤처·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1일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'23년 ICT벤처·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

□ 지원대상 : 충북도내 ICT/SW 벤처·중소기업

※ 충북지역에 본사 또는 지시를 둔 ICT/SW 기업 중 자시제품/서비스/기술을 보유한 기업

□ 추진목적 : 인공지능(AI), SW, Big DATA, 블록체인 등 ICT 융합

R&D 과제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

□ 모집방법 :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기업(과제) 선정

□ 모집기간 : 공고일 ~ '23. 4. 27.(목), 17:00限

□ 지원기간 : 지원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~ '23. 11. 30

□ 지원규모 : 4개 과제 / 기업당 최대 48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 구 분	지원과제수	지원금액		자부담	총사업비	Ы	ュ
1 4	지근되제구	도비	시군비	(현금)	(과제당)	U)	_ <u></u>
ICT융합 기술개발	4개 과제	30,000	18,000	12,000	60,000		

※ 사업내용 및 목표는 사업 추진 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

2 세부 지원내용

□ 지원개요

- 총사업비 : 과제당 60,000천원(지원비 48,000천원, 자부담 12,000천원)
 - ※ 과제 당 지원내역: (도비) 30,000천원, (시군비) 18,000천원, (기업부담금) 12,000천원
 - ※ 선정된 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시(기업지원과) 혹은 군(경제과, 지역경제과, 경제정책실 등) 에서 본 사업의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 과기원으로 제출해야 함
- O 사업내용 : 지역 ICT 분야의 핵심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
- O 지원내역 : 인건비, 재료비(프로그래밍, 테스팅 등), 연구과제추진비, 연구활동비 지원
- O 추진절차



□ 세부사항

- O 사업비 지급 : 1차 집행(50%), 2차 집행(50%)로 구분하여 지원
- O 추진내용
 - ICT/SW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선정과제의 기술개발 지원 및 수행
 - 국내·외 최신 ICT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산·학·연이 보유한 기술, 장비, 인력을 활용하여 성과도출이 가능토록 지원
- O 결과보고 시 참고사항
 - 결과보고서,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

□ 과제 제안(수행)시 의무사항

○ 총괄책임자는 최소 30%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

3 지원대상

□ 공통사항

- 동 사업 지원 대상(ICT/SW 관련기업) 기준
 - 충북도내 사업장(본사 및 지사)을 두고 있는 기업
 -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/SW 산업군(群)에 포함되는 기업
 - ※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단순 도소매,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
 - 컨소시엄 구성가능 (제안 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으로 구성 가능. 단, 기업은 충북도내 기업으로 한정)

○ 지원제외 대상기업

- 기술료 미납 기업(접수기한 내 납부 시 신청 가능)
- 공고일 기준 휴·폐업 상태의 기업
- 충청북도 이외 지역 소재의 기업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제재처분 기업 또는 연구자

구분	지원제외 대상
검 토 기 준	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.
	▷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(주관·참여), 신청기업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	-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	- 의무사항(각종보고서, 기술료납부, 잔액 및 환수금)불이행
	-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
	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
	- 파산・회생절차・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
	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	-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,000% 이상인 경우
	▷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·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
	▷ 참여율 제한
	- 과제책임자 :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, 참여율 30% 미만
	- 참여연구원 :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, 참여율 100% 초과
	※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<u>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와 관련하여, 접수 마</u> 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, 총괄책임자

□ 유의사항

- 예산 산정 시 '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</u> 사업 처리규정'을 준용
- <u>부가가치세, 관세, 사후환급 등</u>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제외
- O 2차 사업비는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후 지급 예정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비고	
1	사업신청서(붙임2) 및 기술지원사업 자체평가표(붙임5)		
2	사업계획서(붙임3) 원본 1부(직인날인)	∘1~7항목 스캔본 온라인 접수	
3	사업자등록증(국세청 홈텍스 발급)	 출력물 원본 제출 (우편 또는 방문) 서류는 기재된 순서(1~7항목)로 제출하며, 원본은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 사업계획서는 	
4	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		
5	표준재무제표증명(2020~2022년/3년간) 각 1부(국세청 홈텍스 발급) ※ 2022년 자료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안 될 경우 세무사 발급용 제출		
6	국세완납증명서(국세청 홈텍스 발급)	3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작성	
7	지방세완납증명서(민원24 발급)		

※ 공고 양식 중 (붙임4) 지방비 매칭 확약서는 선정 이후 협약 시 제출

□ 제출방법

O 신청기간 : 공고일 ~ '23. 4. 27.(목), 17:00限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

① 온라인 등록

(http://bizon.cbist.or.kr)

※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

②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※ 상기 제출서류 일체

- (온라인)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 클릭하고,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
- (오프라인)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- ※ 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하며 우편 접수 시, 마감 전까지 확인전화(☎043-931-2944) 요망

접수처 : (28126)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,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1관 603호 김주연 주임

- O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,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전 확인 필수
- O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□ 기업 실태조사

- O 필요시 지원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추진 가능
 - 사업장 보유여부, 보유기술, 연구인력, 연구실 기자재, 제출서류 등 진위여부 현장확인 (평가위원, 사업담당자 등)

□ 서면·발표평가

O 평가위원 : 산·학·연·관 전문가 5명 이내로 평가위원 구성

○ 평가방법 : 지원신청서 토대로 서면/발표 평가(15분 내외) 진행

O 선정기준 : 신청기관의 추진의지, 대상사업의 추진단계, 파급효과,

ICT 분야 비중(중요도) 등 종합하여 선정

O 평가항목

구 분		평 가 항 목	배점	
		o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	10점	
	사업목적 및 내용의	o 사업목적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	10점	
	적합성 (30점)	o 과제 수행 가능성	10점	
평	과제 수행능력 (30점)	o 사업 수행방법의 구체성	10점	
1		o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	10점	
가 		o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	10점	
사		(추진일정, 수행조직, 업무분장)의 적정성	10. 日	
	경영상태 및 기술력 (10점)	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	5점	
항		o SW개발 보유능력 및 기술경험, 의지, 수준	5점	
	기대효과 (30점)	o 사업의 기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	10점	
		o 향후 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	10점	
		o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가능 여부	10점	
합 계				

6 세부 추진일정

추진절차 수 행 내 용 추진일정 4월 초~ 4월 말 신청 · 접수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(2주간 공고) \parallel 선정평가 및 • 사업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(선정기업 및 지자체 통보) ~ 5월 중 결과통보 ※산학연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1 협약체결 및 •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사업비 교부 ~ 5월 (협약체결: 과기원→선정기업) (선정기업) $\downarrow \downarrow$ 사업착수 및 협약체결일 • 선정 과제별 사업 수행(선정기업) 사업수행 ~ 11월 \mathbb{I} • 사업 추진 중간평가(선정기업) 중간평가 8 ~ 9월 -진행상황, 향후 일정 등 점검 추진 \parallel • 사업 최종 결과평가 (과기원 → 선정기업) 결과평가 11월 - 과제 최종결과 사업 성공·실패 여부 등 확인 $\downarrow \downarrow$ 결과보고서 •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2023년 1월 제출 및 - 과기원 → 충청북도, 시군 사업비 정산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[붙임]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

○ 정보통신산업의 정의〈정보통신산업진홍법 제2조제2항〉

- "정보통신산업"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(이하 "정보통신제품"이라 한다)을 개발·제조·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(이하 "정보통신 관련 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산업을 말한다. 다만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.
 - 가.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
 - 나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
 - 다.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|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
 - 라.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
 - 마.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
 - 바.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
 - 사.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
○ 참고사항

-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
 - 2. "소프트웨어산업"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 - <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3호 >
 - · "정보시스템"이란 정보의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신·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.
 - 3. "소프트웨어사업"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.
 - 4. "소프트웨어사업자"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
 - 1. "전자문서"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,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.
 - 5. "전자거래"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.
-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
 - 제2조(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)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"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제3조(정보통신산업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"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.

[별표 1]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(제2조 관련)

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전자상거래업	4791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 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85504
○ 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(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)	869

-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

- 3. "이러닝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업(業)을 말한다.
- 가.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·개발·제작·수정·보관·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
- 나. 이러닝의 수행·평가·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
- 다.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
 - ·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
 - ·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
 - ·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
-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
 - 2. "정보보호산업"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(이하 "정보보호기술"이라 한다)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(이하 "정보보호제품"이라 한다)을 개발·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(이하 "정보보호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

제2조(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)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"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정보통신산업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"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.

[별표 1]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(제2조 관련)

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전자상거래업	4791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 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85504
○ 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(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)	869